

청년과 희망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겨루기

/김태호 박종철출판사 대표

1. 사태의 진행

정부가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를 비판하며 자신들 정책을 관철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많은 입씨름이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긴 힘겨루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2015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의결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비’하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와

대책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으면 2016년도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25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의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15년 12월 10일, 정부는 아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에 중앙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러자 다시 12월 17일, 성남시는 그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각각 예정된 대로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0일, 보건복지부는 단체장이 집권당 소속인 경기도에 협조공문을 보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없는 사업이 성남시 예산에 반영되었으니 성남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해가 바뀌자마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라는 사업을 도입하면서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와 성남시는 정책을 집행해 수당과 배당을 지급했다.

중앙정부는 성남시에는 해당하는 액수의 교부세를 줄였고, 서울시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이에 불복하자 정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청년희망재단과 협력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항하는 ‘경쟁 상품’을 내놓고 청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청년’과 ‘희망’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서울시,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기로 하자.

2. 성남시의 청년배당 — 부분기본소득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무상 산후조리원 사업”, “무상 교복”과 함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의 하나다.

2010년(당시 민주당 후보)에 이어 2014년(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기본소득 지지자이고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의 일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 6일에 열린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IN 성남’ 기조강연에서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시행할 때 기본소득 논쟁이 대한민국에 확대되길 기대했다,”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됐고 제도를 정착시켜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소신을



성남시 청년배당 2016년도 3분기 안내문

드러났다. 또한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2015년 6월부터 “기본소득, 청년배당 들어보셨나요?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제는 잘 알려졌지만, 기본소득이란 “국가 등 정치공동체로부터 개별적인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며 이때 “현금 이전은 노동 여부와 무관하여 일체의 자산 심사 없이 이루어

진다.” 이런 의미에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 기본소득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금민, 『해방적 기본소득과 탈자본주의 이행』, 『월간 좌파』 2016년 7월호, 42~43쪽).

성남시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이다. 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배당은 성남 주민 전체가 아니라 청년, 그것도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한 24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배당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1월 20일에 시행한 2016년 1/4분기 청년배당은 1991년 1월 2일에서 1992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하고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고, 2016년 4/4분기에는 1991년 10월 2일에서 1992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성남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1분기에는 해당자 13,300명 가운데 10,574명, 2분기에는 11,162명 가운데 10,451명 등 93.6%가 수령했다고 한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배당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분명하지만, 주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연령집단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부분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완전기본소득’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광은의 책 『모두에게 기본소득을』(박종철출판사, 2011년) 84쪽을 보면, ‘완전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이나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 등의 구분이 피츠패트릭(Tony Fitzpatrick,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Palgrave Macmillan, 1999, pp. 35~38)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성남시 청년배당이 지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주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지역화폐라는 점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배당은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상품권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청년배당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그것뿐이다. 다른 어떤 심사도 없다. 아울러 상품권으로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 청년배당이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나 현물기본소득인 것은 전혀 아니다. 성남시 안에서는 상품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문제가 없진 않다. 요즈음의 소비 추세를 감안한다면,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얼마나 많은 업소가 이 상품권을 받을 지도 미지수다.

성남시 청년배당 액수는 현재 분기별로 125,000원이다. 애초에는 연 100만원, 즉 분기마다 25만원을 계획했다. 중앙정부의 반대로 액수가 줄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9항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렇게 “지출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줄어든 만큼 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배당을 시작하기 직전인 2015년 12월에 그 시행령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았다. 성남시는 “현재 지급 유보된 절반의 지원금”은 재판 결과에 따라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정부의 재정 패널티”로 쓸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두 차례 진행된 청년배당 사업에 대한 성남 청년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9월 28일에 열린다. 녹색전환연구소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년들, 청년배당에 답하다!”

에서 발표될 결과를 주목하기로 하자.

3. 서울시의 청년수당 — 상당히 조건이 많은 참여소득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은 2015년 11월에 「2020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단연 “청년활동지원사업”, 곧 “청년수당”이었다. 2016년 4월 11일에 그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3천 명을 선발하여 “사회 참여 활동비”로 최장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홈페이지(<http://youthhope.seoul.go.kr/#page1>부터 #page10까지)를 통해 이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20대 청년 144만 명 가운데 ‘사회 밖’ 청년이 50만 명에 이른다면서도 3천 명에게만 청년수당을 준다고 한다. 선정심사위원회가 건강보험료, 최종 학력 졸업 증명, 고용보험,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한다. 지원된 수당은 학원비, 면접을 위한 교통비 등 취업이나 창업과 연관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매달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내야 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해 내역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할 때는 수당의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홈페이지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차별성도 설명되어 있다. “정형화된 교육훈련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청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 청년의 자율적인 진로·사회활동을 지원해 진로설계 및 능력증진을 돕”는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부분기본소득이라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을 즉각 도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 가운데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이라는 것이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획한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박종철출판사, 2014년)에 실린 서정희와 조광자의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에 따르면, 앳킨슨(Atkinson, A. B.)은 “기본소득이 생산적인 활동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참여소득을 제안했다. “광범위하게 정의된 사회적 기여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참여”가 노동시장 참여만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교육, 훈련, 돌봄노동, 자원봉사 따위가 모두 참여 행위일 수 있다. 기본소득과는 달리 참여소득에서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앳킨슨도 문제로 지적하지만,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소득을 참여와 연계하는 식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137~138쪽).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주요 내용

자료: 서울시

지원대상	서울 거주 1년 이상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현금 지급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 제공 및 활동현장 연계
선발과정	1차 정량평가(가구 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
	2차 정성평가(사회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 우선 선발
사업일정	5월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위한 민관 전문기관 모집·선정
	6월 지원 대상자 공개 모집, 1·2차 심사 및 선정
	7월 오리엔테이션 및 활동 지원 시작 12월 결과 보고

그렇다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앳킨슨 등이 주장하는 ‘참여소득’ 일까? 참여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즉각적 실시에서 양보하자는 것은 ‘무조건성’, 즉 노동 참여 여부와 관련된 것이지 자산 심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온전한 참여소득이라 볼 수 없다.

서울시는 2016년 5월에 시행하려던 계획이 중앙정부의 반대로 연기되자 다시 7월 15일을 마감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리고 예정대로 자격을 심사했다. 중요한 항목은 자산이었다.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자신의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종 신청자는 6,309명이었다. 평균으로 보면, 나이는 만 26.4세, 미취업 기간은 19.4개월, 가구 건강보험료는 직장 83,011원(소득 268만원), 지역 70,920원(소득 207만원).

이런 식의 심사에 뒤통이 없을 리 없다.

『중앙일보』 2016년 9월 8일 자 제목은 「허점 드러난 서울시 청

년수당. 한 해 2억원 버는 가정 자녀에게 월 50만원 청년수당」(<http://news.joins.com/article/20567536>)이다. 기사는 새누리당 소속 이숙자(서초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의 “허점”을 밝히고 있으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자에게도 돈을 준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기사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이다. “청년수당 수혜자 상당수가 중·상류층 가정 출신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종합적으로 따져 수혜자를 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 가정 출신 청년이 수혜자에 포함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빈곤을 증명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비판과 그랬어야 했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변명이다. 비판하는 쪽의 이야기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정책을 시행한 쪽도 그런 이야기에 반론을 펴기는커녕 있을 수밖에 없는 착오를 반성하고 있는 식이다.

이 기사 끝머리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모호한 활동 목표”는 오히려 청년들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엇이든 하고 싶어요”와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존엄과 자존이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구구하게 증명하는 따위의 행위를 하지 않고도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

위 기사는 청년수당을 받은 어떤 여성이 “그 돈으로 한 번에 10만원이 넘는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글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가 비난을 받고 삭제한 사례를 소개했다. 누가 왜 비난했을까? 취업에

피부 관리가 필요한 세상 아닌가?

자산 심사나 수당의 용도 제한만큼 중요한 문제는 또 있다. 절차의 복잡함. 아니 전혀 실효가 없는 행정 절차.

서울의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지원하며 벌어진 일들을 묘사한 『한국경제』의 기사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청년수당 신청해 봤습니다」(<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64885G>)에 따르면,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고 한다. 신청 사이트에 지원 동기와 활동 계획을 적게 되어 있는데, 6개월 활동에 대해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300자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기사에는 그렇게 제출한 계획서를 “자기 반성문”이라고 묘사하기까지 한다. 신청한 이유를 쓰게 만드는 것, 300만원으로 6개월 동안 할 일을 적게 하고 이를 심사하는 것, 이 모두 모호한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하려 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게는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8월 초에 청년수당으로 갈아탄 청년이 30여 명이라고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맞불 작전에 나섰다.

4.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패” — 굴욕적인 선별적 복지

2016년 2월호에 실린 필자의 글 「허울 좋은 ‘사회적 합의’의 과

탄」은 2015년 9월 15일의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이 파탄났음을 밝혔다. 대통령이 2016년 신년 담화에서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이라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했지만 그 대타협은 파탄 날 수 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청년희망재단과 청년희망펀드였다. 공익신탁이라는 희한한 방식의 그 펀드에 대해서도 그 글은 설명하고 있다.

이제 그 재단과 펀드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대항하는 중앙정부의 무기가 되었다. 2016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는 청년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가 무엇인지 보기로 하자. 이 프로그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그 목적을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 촉진 및 빈곤탈출 촉진”이라고 밝히고 있다(http://www.moel.go.kr/policyinfo/new/support/view_content04.jsp).

맞춤형인 만큼, 대상이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취업성공패키지 I”,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은 “취업성공패키지 II”, 그리고 우리의 관심인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여 자신의 '취업역량'을 진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보다 '취성패'로 검색되는 글이 더 많은데, 이때의 '취성패'는 대개 '청년 취성패'다.

취성패의 단계도 셋으로 나뉜다. 1단계는 “상담, 의욕제고, 경로 설정(3주~1개월)”, 2단계는 “직업능력 향상(최대 8개월)”, 3단계는 “취업알선(3개월)”. 세부 항목을 설명한 것을 보면, 1단계에서 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통해 개인별로 지원 계획을 세우고 2단계에서 직업훈련, 일 경험, 창업을 지원하고 3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한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대상은 “청년(18~34세, 소득무관)”이라고 되어 있다. “고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 후 미취업자,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에 이어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이

라고 조건이 등장한다. “소득무관”이랬다가 연매출액 기준이 나오는 것은 무슨 일인가?

취성패의 지원 내용은 참여수당, 훈련 참여자 지원수당, 훈련비 지원, 취업성공수당 등으로 나뉜다.

2016년 8월 8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에게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는 평균이 1.7년, 장기훈련은 4년까지 이르는 지원서비스”라며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취성패를 포기하는 것은 “진짜 큰 기회의 박탈”이라 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11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협력 방안」이 등장하여, 취성패의 지원 내용을 보충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취업준비수당’이다.

취성패 참여자에게 한하여 면접비와 교통비, 정확히 말하자면 면접 때 입을 정장 빌릴 돈, 지원서에 사용할 사진을 찍는 데 드는 돈, 먼 거리로 면접을 갈 경우에 드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용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보다는 고용하려는 사람을 지원하는 격이다.

물론 신청자 전부가 아니라 재산을 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발할 것이며 그 숫자가 24,000명가량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일단 면접에 응시할 자격을 얻으면, 또 한 번의 심사를 거쳐 면접에 들어갈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채용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청년희망펀드로 모인 돈이란

다. 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 보자며 재단을 통해 민간에게서 거둔 돈이다. 그런 돈으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과 거를 줄속 행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으로 보나 시행되는 방식으로 보나 취업준비수당은 기본소득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어떤 조사나 연구가 바탕이 되었다기보다는 서울시 정책 때문에 급조된 정책일 뿐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자체가 생색내기였다.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뭔가를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자 궁색하게 시작된 일이었다. 그리고는 자격을 심사하고, 단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고 등등 흠 잡히지 않고자 했을 뿐이다.

게다가 얼마 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위탁사업비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위탁사업 비중이 높다며 비판해 왔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은 더 높았던 것이다(「‘청년수당’ vs ‘취성패’」. 복지부 당혹케 한 고용부, 《머니투데이》 2016년 8월 17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81610560874873>).

5. 노인, 청년, 그 다음은?

정부의 방해로 성남시 청년들은 애초의 절반만큼의 청년배당을 받고 있다. 서울시 청년들은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 가운데 어떤 줄에 서야 할지 고심하지만, 사실 둘 다 만만한 것이 아니다. 수능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수시 모집 때문에 더 나은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 청년들 가운데 일부는 몇 년 전에 대학 입학 원서를 쓰며 겪었던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월 2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청년에게는 그런 거짓말은 안 하니 좋아졌다고 해야 할까?

청년이든 노인이든, 정부가 정한 자격을 입증하는 수고와 굴욕을 겪고 정부가 정한 대로 살아야만 최소한의 생계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2016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다. 어쩌면 국민 99%가 그런지도 모른다.

그냥 국민을 믿었으면 한다. **【조교】**